

고 시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7-96호

**문정동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
사업시행인가 고시**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21호(2010.11.25)로 최초 고시 되고, 2016.06.01. 조합설립인가 되고,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6-83호(2016.08.11)변경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7-64호(2017.5.25.)로 정비계획변경(경미한 변경)된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의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, 동법 제2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동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
2. 관련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재생과(☎ 02-2147-2896)와 문정동136

번지 일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(☎ 02-409-9448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
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7년 7월 6일

송 파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문정동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
3. 정비구역의 면적 : 64,972.6㎡
4. 사업시행자 : 문정동136번지 일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정수희)
5.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새말로154, 3층
6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7. 사업시행인가고시일 : 2017. 7. 6.
8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:
별첨
9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구 분	대지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최고높이(m)	건축물의 주된용도	층 수
획지1	44,503.7	21.36	246.55	53.55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지하2층 ~ 지상18층
획지2 (존치)	2,119.9	-	-	-	종교시설	

10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공 급 구 분	주택의 형 태	동 수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)		
				60㎡이하	60~85㎡미만	85㎡이상
계		14	1,265	855	410	-
분 양	공동주택	14	1,185	775	410	-
임 대	공동주택	믹스	80	80	-	-

1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		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			
종류	규모(㎡)	종 류	규모(㎡)	시행자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도로 / 공원 / 사회 복지 시설	16,313.7	도로	8,178.0	조합	시행자, 설치비용
		청소년수련시설	2,066.6	조합	시행자, 설치비용
		보육시설	1,046.9	조합	시행자, 설치비용
		노인복지시설	1,714.5	조합	시행자, 설치비용
		공원	5,092.5	조합	시행자, 설치비용
		보행자도로	250.5	조합	시행자, 설치비용

끝.